

택국장, 도로국장, 교통국장, 하수국장, 민방위
 국장, 소방본부장, 공무원교육원장, 상수도사업
 본부장, 지하철건설본부장, 청소사업본부장, 도
 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, 종합건설본부장, 서울시
 립대학교 총장, 세종문화회관장, 교통방송본부
 장, 한강관리사업소장, 지하철공사 사장, 시설
 관리공단 이사장, 강남병원장, 농수산물도매시
 장관리공사 사장, 도시개발공사 사장, 도시철
 도공사 사장,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및 답변
 에 필요한 3급이상 공무원

【서울특별시교육청】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 기획관리실장,
 초등교육국장, 중등교육국장, 사회교육체육국장,
 관리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이상 공무원

4. 서울特別市資金運用實態와서울特別市金庫에
 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承認의件

(15時 27分)

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
 特別市 資金運用實態와 서울特別市金庫에 대한
 行政事務調査計劃 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財務經濟委員會 李廷義議員 나오셔서 提案說
 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李廷義議員 새정치국민회의 所屬 財務經濟委
 員會 李廷義議員입니다.

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, 그리고 同僚議員
 여러분, 우리 委員會에서 採擇한 서울特別市
 資金運用實態와 서울特別市金庫에 대한 行政事
 務調査計劃書에 대하여 報告 말씀드리겠습니다.

同 計劃案은 지난 第80回 臨時會 第4次
 本會議에서 本議員 外 53名이 發議 要求하
 여 採擇된 바 있는 案件으로, 우리 委員會
 는 그 동안 市金庫制度改善小委員會 活動을
 통하여 提起된 서울特別市 資金運用과 金庫運
 用實態 등을 보다 深度 있게 파악 조사하기
 위하여 1995年 10月 12日 第80回 臨時會
 閉會 中 第4次 財務經濟委員會를 開催하여
 出席委員 全員 滿場一致로 同 計劃案을 委員
 會案으로 採擇하게 되었습니다.

同 行政事務調査는 우리 委員會에서 1995
 年 10月 16日부터 同年 12月 30日까지 地
 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3第1項第1號 및 第5
 號에 정하고 있는 서울特別市 財務局과 서울

特別市金庫를 對象으로 하여 資金運用實態와
 市金庫 業務에 대하여 調査하되 資金運用現況
 및 實態, 月別 資金運用計劃 및 執行內譯,
 公共預金, 定期預金の 期間別, 利率, 利子額
 現況과 定期預金の 中途解止 件數, 金額 등
 의 事由를 규명하고, 商業銀行과의 市有財產
 賃借契約關係, OCR센터 設置經緯 및 運營事
 項 등 우리 委員會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 部分에 대하여 重點調査하도록 정하였습니다.

또한 地方自治法 第36條에 의거 調査와
 關聯된 報告要求, 現地確認, 書類提出要求, 證
 人, 參考人 등의 出席要求 및 檢證의 方法
 으로 調査하고, 調査過程에서 必要時에는 委
 員會의 議決로 金融專門家 및 金融從事者,
 市議員, 關係公務員을 포함한 公廳會를 實施
 하여 市金庫運用의 制度改善을 모색하는 方向
 으로 정하였으며, 調査活動을 效率의으로 進
 行하기 위해서 小委員會, 또는 班을 構成할
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기타 자세한 內容은 配布하여 드린 計劃書
 案을 參考하여 주시고, 아무쪼록 우리 委員
 會에서 採擇한 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議
 員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. 計劃書에 대한 審
 查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○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.

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提案說明한 서울
 特別市 資金運用實態와 서울特別市金庫에 대한
 行政事務調査計劃 承認의 件을 議決하고자 합
 니다.

議員 여러분, 異議 없습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

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특별시자금운용실태와서울특별시금고에대한
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

조사목적

서울특별시 교통·환경·시설물유지관리
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
 어는 때보다도 시재정 확충이 필요하므로
 서울특별시 자금운용현황 및 시금고가 취

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보관실태 등을 조사하여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제도개선 및 이자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.

I. 조사개요

□조사기간

○'95.10.16~'95.12.31(77일간)

□조사 대상 기관

○서울특별시 재무국
○서울특별시금고

□조사시행위원회

○재무경제위원회

□추진경위

○'95. 8.25-제79회 임시회중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금고 자금운용제도개선을 도모하고자 "서울특별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"를 재무경제위원 7인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어 가결됨.

○'95. 9. 4-제1차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금고 업무체계 파악 및 관련법령 검토와 시금고 보유자금의 이자율 분석, 타시·도의 금고운영실태 등 위원별 업무분담

○'95. 9.15-제2차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시금고관계공무원 및 은행관계자를 출석시켜 답변을 들었고 위원별 분담사항 진행사항을 검토·분석하였음.

○'95. 9.21-제3차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금고운영 자금운용현황 및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·조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하여 재무경제위원회에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안 가결

○'95. 9.28-제4차 본회의에서 이정의위원의 5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서울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관한 건 채택의결

○'95.10.12-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

II. 조사실시 계획

1. 조사사안의 범위

○본 업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①항1호 및 5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서울특별시금고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하되,

- 서울특별시의 자금운용현황 및 실태
- 서울특별시 월별자금운용계획 및 집행내역(1991~1995)
- 공공예금, 정기에금의 기간별, 이자율, 이자액현황(1991~1995)
- 정기에금의 증도해지 건수, 금액, 사유 등(1991~1995)
- 상업은행과의 시유재산 임차계약 현황(1991~1995)
- 시금고 관련 상업은행의 OCR센터 설치경위, 운영현황, 운영비용 등

○기타 본 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 조사한다.

2. 조사방법

○조사와 관련된 보고요구, 현지확인, 서류의 제출요구, 증인·참고인 등 출석요구 및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한다.

- 보고요구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재무국 및 서울특별시금고
- 서류제출, 현지확인 대상기관

○조사위원회가 조사진행중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신문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, 참고인으로 채택 신문할 수 있다.

○조사과정에서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금융전문가 및 금융종사자, 시의원,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금고운영의 제도개선을 모색한다.

○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3. 조사일정

○조사일정표(별지)

4. 조사장소 및 조사활동 시간

○장소: 위원회회의실 및 피조사기관

6 (第81回—第1次)

<p>○시간 :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 또는 의장이 허가한 범위내의 시간</p> <p>5. 조사의 보고 및 처리</p> <p>○본 조사가 완료시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</p> <p>○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울시나 피조사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조치한다.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 제19조)</p> <p>III. 소요경비</p>	<p>○조사위원회 활동경비, 증인 등의 지급비용, 공청회 경비 등은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른다.</p> <p>IV. 행정사항</p> <p>○시장은 본 조사계획에 따라 관련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한다.</p> <p>○사무처장은 본 조사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 5명(전문위원1, 행정지원2, 기록지원2)을 배치하며, 본 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.</p>
--	--

(별 지)

조 사 일 정

일 시	대 상 기 관	조 사 장 소	조 사 방 법	비 고
'95. 10~11월중	· 재 무 국 · 서울특별시금고	위원회 회의실	· 업무보고 · 질의·답변 · 자료요구 등	
	"	재 무 국 서울특별시금고	· 서류확인 등 현장검증	
	"	위원회 회의실	· 증인·참고인 등 출석·신문	
'95. 11~12월중			·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	별도계획 에 의함.

※본 일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기 및 회수, 공청회 일시, 현장검증 시기 및 방법 등을 의결로 시행한다.

<p>5.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(運營委員會委員長 提案)</p> <p>(15時 32分)</p> <p>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運營委員會 金鍾來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金鍾來議員 안녕하십니까? 江西區 出身 金鍾來議員입니다.</p> <p>서울特別市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同 決議案은 地方自治法 第118條, 同法 第</p>	<p>125條 및 地方教育自治에關한法律施行令 第24條와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第18條 規定에 의거,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1994年度 서울特別市 歲入·歲出決算書가 9月 29日附로, 教育監으로부터 1994年度 서울特別市 教育費特別會計 歲入·歲出決算書가 10月 2日附로 우리市議會에 提出되었고, 96年度 서울特別市豫算案 및 教育費特別會計 豫算案이 11月 11日 까지 提出될 것이 豫想됨에 따라 地方自治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한 1994年度 서울特別市 歲入·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과 同法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1996年度 서울特別市 豫算案을 審査 處理하고, 地方教育自</p>
--	--